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6.(목) 14:00 배포 2026. 3. 26.(목) 11:50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3.27일)

- 제조사·주유소 등은 정당한 이유 없는 과다 보유, 판매 기피 금지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6.3.27일**부터 시행한다.(☞참고1)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는 요소수 및 요소를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시 위반시 시정명령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제29조의2)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기후부·산업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참고2)

※ 참고: 1.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민경신 (044-215-2770) 사무관 박지훈 (jihun2150@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교통환경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사무관 신봉주 (jihuya13@korea.kr)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김건혁 (044-203-4930) 사무관 김영숙 (ysv2264@korea.kr)

참고 1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요소수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3호 기준을 적용한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참고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적용대상	구 분	담당 부서	전화번호
자동차 촉매제 (요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2 044-201-6937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481-1404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55-211-1361
	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42-865-9089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62-410-5722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058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62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33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18
자동차 촉매제의 원료인 요소	산업통상부	중동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1670-7072